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 안내 자료

아동 보호법 2019 파트 4 (Children's Guardian Act 2019 Part 4)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활동하는 Working with Children Check(아동 업무 적합 증명서, 이하 'WWCC') 소지 근로자를 위한 정보

2020년 3월 1일부터 NSW 주의 아동 보호법 2019(Children's Guardian Act 2019 (NSW))이 발효되어서 기존의 옴부즈맨법(NSW Ombudsman Act 1974) 파트 3A 조항을 대체합니다.

본 법은 '우려 행동 신고 제도(Reportable Conduct Scheme, 이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NSW 아동 보호 사무소 (NSW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이하 '아동 보호국') 에서 관할합니다.

본 제도는 교구 내 WWCC 소지 근무자(이하 'WWCC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성직자, 교구청 및 사목구의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직원, 자원 봉사자, 계약직 포함)가 해당됩니다. WWCC 면제를 받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려 행동 신고 제도'란 무엇입니까?

'우려 행동 신고 제도'란 WWCC 소지자가 다른 WWCC 소지자의 신고 대상이라는 혐의(Reportable Allegations)가 드는 행동,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확신이 드는(Reportable Convictions) 유죄 행동에 대해 법인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각 교구의 수장은 주교이지만, 실제로 교구 내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서 주교를 대신하여 이 의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의 행동을 포함하여 미성년(18세 미만)에 대한 WWCC 소지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다룹니다.

이 제도는 또한 WWCC 소지자와 관련해 제기된 신고 가능한 '혐의' 또는 '유죄가 확실한' 행동에 대해 아동 보호국에 신고해서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주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아동 보호법 2019 에서 정의하는 신고 대상 행위¹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동석한 상황에서 이뤄진 **성범죄(sexual offence)**
-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동석한 상태에서 범한 **성추행(Sexual misconduct)**
-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ill-treatment)**
- 아동에 대한 **방치(Neglect)**
- 아동에 대한 **폭행(assault)**
- **형사법 1900(Crimes Act 1900) 섹션 43B 또는 316A** 조항에 의거한 범죄(**offence**) 및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본 제도가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귀하가 WWCC 소지자인 경우, WWCC를 소지한 다른 아동 업무 종사자가 신고 대상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거나, 확인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WWCC 소지자이고 아동에 대한 귀하의 행동에 대해 신고 대상 행위 혐의가 제기될 경우, 교구는 아동 보호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¹ Children's Guardian Act 2019



Office for
Safeguarding
(CHANCERY)

CATHOLIC
DIOCESE OF
BROKEN BAY

신고 가능한 혐의 행동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WWCC 소지자에 관한 신고 가능한 혐의 행동
또는 신고 대상 유죄 행동은 교구 사제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제는 해당 사실을
교구청/사목구(Chancery & Parishes)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는,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이나 전화
02 8379 1605 로 직접 신고 하셔도 됩니다.

참조 문헌

Children's Guardian Act 2019
Policy: 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Guidelines: What Conduct Must be Reported
to OCG (*칠드런스 가디언 액트 2019*)
정책: 신고 대상 행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OCG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

추가 정보

우려 행동 신고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보호국 웹사이트 참조:

<https://ocg.nsw.gov.au/organisations/reportable-conduct-scheme>

신고 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 보호법 2019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와 제보는 신중히 다뤄질 것입니다.